

## 국문 요약문

###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

권정임/강남훈

1.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이하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기금안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 한다.

보편복지체제의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기 위해 특히 기금안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기금안이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와 동일한 길드 사회주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sup>1)</sup>, 곧 노동중심주의에 기초하면서도, 그 한계를 일정 정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무엇보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와 공유하는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로 인해 실패함으로써, 스웨덴의 경우로 대변되는 기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복지체제가 기초하는 근본전제의 해체와 대체, 곧 ‘과학혁명’이 필요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근본전제에 기초하여 기금안을 재구성할 경우 새로운 보편복지체제의 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들이 기금안에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스웨덴 모델’, 즉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민당)이 주도했던 스웨덴 특유의 “종합적인 경제-사회 운영 모델”의 일부로 형성되었다. 스웨덴 모델이 창출된 배경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타협이다. 이에 걸맞게 스웨덴 모델은 “혼합경제”(mixed economy)라는 특성을 갖는다. 곧 ‘생산’에서는 현존하는 “시장경제의 본질적 원리들”을 유지하지만, ‘분배’에는 “국가”가 “포괄적으로 개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때, 스웨덴 모델은 산업전체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노동계급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민당은 대자본 위주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정책을 취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현존하는 분배부정의’ 또는 “시장을 통한 일차적 소득분배” 자체의 시정이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일차적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이 복지체제는 “복지국가”라는 “소득재분배 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또한 베버리지 복지모델의 영향 아래,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다양한 사회적 위험, 특히 궁핍(want)의 해소에 둔다. 이를 위한 방대한 복지비용의 조달을 위해 이 체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회적 소득이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 동시에 “완전고용의 달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처럼 노동, 물론 시장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중심주의적이다.<sup>2)</sup> 물론 이는 이 복지체제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가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중심주의라는 사실의 귀결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는 스웨덴 국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왔다. 또한 아직까지도 복지체제의 모범적·선구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중심적이며 노동중심적이라는 살펴 본 두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초래된다.

1) ‘근본전제’란 특정 이론 또는 과학 체계의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다.

2) 이 글에서의 ‘노동’, ‘노동자’ 및 ‘노동중심주의’는 사실상 ‘임노동’ 또는 ‘시장노동’과 관련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지체제가 부정의한 분배구조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체제는 재분배를 통해 현존하는 분배부정의를 상당히 완화시킨다. 그렇지만 재분배의 주요 재원이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임을 고려할 때, 분배부정의 완화효과는 주로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자연자원이나 과학기술,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가치상승처럼 “해당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자원”, 곧 공유지(communs)<sup>3)</sup>에서 유래하는 ‘공유지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통한 지가상승이나 과학기술 발전의 독점적 사용에서 오는 이익 같은 공유지 수익은 대부분 지주나 자본가 같은 특정 개인들이 취득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개인소득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공유지 수익은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복지체제가 부정의한 분배구조를 간과한다는 사실은 나아가, 이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가 사실상 심화되어 이 복지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계급 간 힘의 균형을 깨기에 좋은 조건을 창출하기 때문이다.<sup>4)</sup>

두 번째 단계는 노동중심주의로 인해 이 복지체제가 과도하게 노동의존적이 되어, 사회경제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 오히려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완전고용정책의 실현을 위해 로봇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로봇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두에게 지속가능하며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 못하다. 나아가 이 체제가 로봇의 생산적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체제는 생산이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주목표, 곧 ‘궁핍 방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복지체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적절하다.

2. 기금안 기획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sup>5)</sup>으로 인해 고수익 기업들이 취득하는 ‘초과이익’(excess profits)에 대한 스웨덴 대기업 노조들의 문제제기다. 이 문제는 1971년의 LO 총회에서 제기되었고, 1973년 마이드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책임자로 일해 줄 것을 LO로부터 요청받았다.

마이드너는 기금안의 목적으로 초과이익 문제의 해결 외에도 재산분배의 균등화 및 경제 민주주의, 곧 자본소유에 대한 임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생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증대를 설정한다. 사실 후자 두 가지가 그의 기금안의 주 목적이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한 고수익 기업의 초과이익 문제를 시정한다는 기금의 목표에 걸맞게, 기금의 재원은 ‘이윤’에서 조달된다. 이에 따라 영리 민간 주식회사 중에서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sup>6)</sup>인 기업은 매해 세전 이윤의 약 20%<sup>7)</sup>를 기금에 납부한다. 납부형태는 신규발행주

3) 유럽 중세의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공유지’는 오늘날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4)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 모델이 약화 또는 해체되는 요인의 하나였다.

5) 연대임금정책이란 사민주의와 노동 운동의 영향력과 이익이 확보된다는 조건 아래, LO가 사용자 측과 협조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합리화를 위해 1926년부터 주장해 온 정책(홍기빈, 2014: 205 이하)이다. 그 핵심은 중위임금(mean wage)을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임금부상은 억제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의 임금은 상향조정하여, 노동계급의 연대와 노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대임금정책은 고수익 기업들에게 초과이익을 허용한다고 비판받는다.

6) 종업원 수의 하한선을 50인에서 100인 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제안된다(Meidner, 같은 책: 69 이하).

7) 이때 납부액을 이윤의 20%로 설정한 이유는 납부액에 대한 면세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작동 가능한 적정 수준이라고 마이드너가 보기 때문이다(Meidner, 같은 책: 58, 마이드너/신정완, 1996: 666 이하).

식 형태다. 이처럼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형태로 기금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식 소유가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과 경제전반에 대한 광범한 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sup>8)</sup>

동일한 목적에서 마이드너는 각 기업이 납부한 주식을 노동자 집단 전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지분소유도, 개인적 배당도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권력관계의 재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형성과 투자 증대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제시했던 기금안의 전제들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금은 해마다 증대에 가는 주식소유를 통해, 무엇보다 재산과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 집단에 유리하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sup>9)</sup> 기금수익의 사용과 관련하여 마이드너는 기금수익의 약 절반은 신규주식의 구매를 위해, 나머지는 교육, 연구사업, 노동조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 같은 노동자 집단 전체를 위한 사업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 제한하여 고찰할 때, 기금안의 이러한 시도는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시정 또는 보완이다.

3. 기금안은 1976년 6월 L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렇지만 국민 다수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실현되지 못한다.

기금기획이 실패하게 되는 이론적 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금이 지배하는 기업과 시장 경제 간의 원리적 상충문제다. 기금지배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극대화 외의 목적들은,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개별기업의 생존원칙이 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은 기금안이 제시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기금안이 제시하는 재산분배의 균등화 및 경제 민주주의 방식은, 임노동자들 또는 그 대변자들에 의한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독점이다. 이때 기금안의 수혜자가 이처럼 임노동자들만으로 국한된다는 점, 그것도 개인배당의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집단적 수혜의 형태로 제한된다는 점은, 기금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낮았던 근거의 하나로 보인다.

세 번째 요인은 초과이윤과 관련된다. 초과이윤을 측량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초과이윤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는 저수익 기업들의 과소이윤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국 차원에서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는 연대임금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sup>10)</sup> 나아가 '초과이윤'이 그렇게도 문제라면, 린드벡이 주장하듯이, 연대임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다.

4. 기금안의 이러한 난점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 이는 무엇보다 마이드너의 기금안이

---

8) 반면 마이드너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통해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설정한 기금의 세 목적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9) 기금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들이 형식적으로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로 쪼개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이드너는 콘체른의 경우 콘체른 전체를 하나의 기업단위로 간주해야 하며 기금이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권한다.

10) 그렇지 않다면 고수익 기업의 초과이윤과 저수익 기업의 과소이윤의 차액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난점에 봉착한다. 나아가 이때 과소이윤이 초과이윤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가 비그포르스로부터 계승하는 길드 사회주의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에 기초하며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그포르스의 사민주의 사상의 근본전제는 노동중심주의다. 이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비약하여, 노동을 모든 성원이 나누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회를 노동 또는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원의 권리와 의무, 특히 ‘소득’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 역시 노동에 연동하는 노동중심주의적인 편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노동중심주의에 일관되게, 그의 경제정책과 구상은 콜(G. D. Cole)을 비롯한 영국의 길드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전개된다. 길드 사회주의적인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는, “산업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치적 결사체”가 “주권을 행사”하고 “일반적인 정치적 문제들과 거시경제정책 영역에선 민주화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중권력체계”다. 그렇지만 이때 국가가 노동자들의 자치적 결사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체계는 사실상 노동/노동자 중심의 체계다. 이런 측면에서 길드 사회주의의 근본전제는 노동중심주의다. 이 체계에서 노동자와 그를 보완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궁핍’ 타파를 위한 복지 수혜자는 될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권리’는 갖지 못한다.

마이드너의 기금안은 비그포르스의 이러한 길드 사회주의적인 구상이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금안이 제시하는 경제의 핵심적 조직형태가, 거시적인 경제의 조정과 보편복지의 관리와 집행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국가의 지원 아래 자본의 집단적 소유를 매개로 운영되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길드 사회주의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로부터 기금안의 살피본 난점들이 파생된다.

첫째, 비그포르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드너 역시 ‘시장경제’를 수용하지만, ‘길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일관된 경제운영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살피 본 첫 번째 난점, 즉 기금지배기업과 시장 경제 간의 원리적 상충의 원인이다.

둘째,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중심주의로 인해 마이드너는 완전고용정책을 전제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와 자주관리를 주장한다. 이는 기금안이 재산분배 균등화에 기초한 경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순되게도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난점의 근본원인이다. 노동자가 아닌 시민들이 배제되면서,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경제적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회수는, 모든 이윤의 원천을 오직 노동으로 볼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중심주의에서 파생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중심주의 및 길드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이념의 영향이 스웨덴 모델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창출을 주도한 중심세력이 강력한 노동조합조직과 사민당 정부 간의 “이중권력체계”라는 점, 완전고용정책과 노동중심주의적인 보편복지체제 등이 그 예들이다.

엄밀히 고찰할 때 기금안은 특히 ‘사회화’와 관련하여 경쟁했던 스웨덴 사민주의의 두 정책 프로그램 중 패배했던 프로그램의 부활이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비그포르스적인 노선과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칼레비(Karlevy)적인 노선으로 분기된다. 스웨덴 모형은 후자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양 노선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기본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5. 대안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나 반스(Barnes), 스탠딩(Standing)처럼 공유부 기금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찾아진다. 이 입장이 기초하는 근본전제는 사회와 경제의 기초로 노동만이 아니라 공유지 또한 부각한다. 이때 또한 성원 모두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 및 공유지 수익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다. 공유지가 실정법상 사유화되어 있는 경우, 공유지에 대한 원칙적인 평등한 사용권은 그 소유자에게 ‘임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공유지 수익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수익권을 정당화한다.<sup>11)</sup> 따라서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이처럼 이 새로운 복지체제는 사회의 기초로 노동만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공유지 또한 부각함으로써, 노동중심주의 및 길드사회주의와 뚜렷이 구분된다. 즉 사회를 노동 또는 노동자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자로서의 전체 성원의 관점에서 고찰하게 된다. 나아가 ‘노동’에 연동되지 않는 성원의 권리, 특히 ‘소득’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기금안을 연구하는 이 글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미드(J. Meade), 바루파키스(Varoufakis) 등의 기획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드와 바루파키스는 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주식자본, 곧 ‘공유 주식자본’(Commons Capital Stock)을 중심으로 공유지에 기초하는 새로운 보편복지체제를 설계한다. 바루파키스에 의하면, 부는 언제나 집합적으로 생산되며 기업들은 특히 주식제도를 통해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고 사회로부터 자본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사회 성원 모두의 기여를 반영하는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대한 배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업이 독점한 공유지 수익, 곧 과학기술이나 주식제도 등을 통해 창출된 공유지 수익으로 ‘공유 주식자본’이라는 형태의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배당’이라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이처럼 공유 주식자본이 공유부 기금의 한 유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절에서는 기금안을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기획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형을 통해, 살펴 본 기금안의 난점들이 해결됨과 아울러 실현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보이고자 한다.

공유 주식자본의 형성은 주식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은, ‘효율성’과 ‘자산소유에서 유래하는 안전과 독립성’의 조화를 위해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한편, 공유 주식자본과 사적 자본의 비율을 대략 50:50으로 설정한 미드의 제안을 수용한다.<sup>12)</sup> 따라서 총자본의 50%를 공유 주식자본의 상한선으로 설정한다.<sup>13)</sup>

바루파키스는 주식을 상장할 때 주식자본의 특정비율, 예를 들어 1%를 공유 주식자본, 그의 범주로 “공유자본금고”(Commons Capital Depository)에 납부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상장된 기업에 비해 신생기업에게 불이익을 준

11) 공유지에 대한 권리 중 ‘수익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해결된다. 즉 그 토지를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유토지 수익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이, 그 토지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 보다 모두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이러한 ‘임대’와 그에 따른 소득은 정당하다. 권정임, 2016: 48 이하 참조.

12) 미드가 공유 주식자본과 사적 자본 간의 적정비율을 효율성과 안전/독립성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유사하게, 바루파키스 또한 공유 주식자본의 적절한 규모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본다. 그는 공유되어야 할 자본의 정확한 규모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13) 공유지 수익의 독점이 더 많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기업보다 공유 주식자본의 비율이 좀 더 높은 데 반해, 반대의 경우에는 공유 주식자본의 비율이 좀 더 낮을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그 비율 또한 너무 낮다. 만약 비율을 높이면,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기업과 자본가 측에서 볼 때, 그가 제안하는 형태의 공유 주식자본은 추가되는 '조세'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의 조세저항은, 라이트가 기금안에 연계하여 제안하듯이, 기존의 법인세를 그와 등가인 '기업의 신주' 형태로 공유 주식자본에 지불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총액이 이전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화폐 수익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공유주식의 배당이 국민전체의 복지로 귀결되는 만큼 세출도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사정에 따라 법인세의 반 또는 적정 부분만을 공유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라이트는 이 주식과세를 "부유세"의 일종으로 본다. 주식과세를 지불하기 위해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신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이, 주식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주식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보다 엄밀히 고찰할 때, 이 '부유세'는 자본이 독점한 공유지 수익의 환수다. 따라서 이 '부유세'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Wright는 자신의 기금기획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이 글에서는 그의 기금 기획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바루파키스의 Commons Capital Depository 기획과 함께 공유 주식자본 기획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바루파키스의 기획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 곧 조세저항 가능성으로 인해 주식자본 공유지의 극히 적은 비율만이 공유화된다는 점이 보완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문제점, 곧 신생기업의 불이익으로 인한 공정성의 위배라는 문제점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과세를 통해 형성된 공유 자본주식은, 공유부 기금의 한 부분, 그렇지만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서, 공유부 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익이나 "기회주의적이고 역진적인 정치적 목적"(같은 글)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공유 자본주식의 관리자, 곧 공유 자본주식 기금의 주 역할은 무엇보다 공유 자본주식의 배당, 곧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유 자본주식은 판매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가능성과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관리의 복잡성 때문이다.<sup>14)</sup> 기업이 망할 경우 그 기업이 납부한 공유주식은 소멸되지만, 이는 새로 생기는 기업이나 흥하는 기업이 납부할 공유주식을 통해 상쇄될 것이다.

공유 자본주식 기금은 개별기업의 지분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해당기업 노동자들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킨다. 그렇지만 이때 노동자들이 위임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권의 상한선은 해당 기업 의사결정권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sup>15)</sup> 이를 통해 노동자들 또는 노조간부의 권력독점과 집단이기주의를 예방한다.

시장실패의 교정과 국가정책은 입법조치 등을 통해 모든 기업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경쟁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공유 주식자본 기금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규제가 준수되는지에 대해 감사권과 견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유주식 자본안은 기금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이를 통해 기금안의 난점들이 해결된다.

둘째, 공유 주식자본안은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기금안이 함축하는 의도, 곧 기존 보편복지체제의 '재분배' 중심의 틀을 넘어서는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정의로운 '분배'를 더 잘 구현한

14) 그렇지만 공유기금 내부의 다른 수익원으로 공유주식이 아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5) 이는 공유 주식자본 비율이 사적 자본보다 더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인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이는 단지, 기금안과 달리, 공유지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정의롭게 분배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장분배 이전에 분배되는 이 기본소득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효과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연계된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 보다 정의롭게 분배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생태보존노동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 또한 촉진할 것이다.

셋째, 거의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층을 갖게 되어 정치적 실현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나아가 기금안을 통해 마이드너가 그렸던 이상사회, 곧 계급과 특권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노조정치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반적인 정치투쟁 간의 간극이 해체되는 “민주적 복지사회” 또한 보다 잘 달성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편복지체제에 잘 부합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의 급속한 증대는 물론, 기존 복지체제에 포괄되지 못하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발생이 예상된다.<sup>16)</sup> 기금안 역시 전제하는 노동중심주의적인 복지체제와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는 “제도적”으로 “부정합”하다. 반면 공유 주식자본안은 이런 난점을 갖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비롯한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유 주식자본안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스웨덴의 보편복지체제와 기금안이 공유하는 이념과 그 근본전제, 곧 길드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하고 이를 노동만이 아니라 공유지 및 그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 또한 강조하는 새로운 근본전제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복지체제에 대한 혁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16)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39 이하를 참조하라.